

공익재판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 750-8553 / 전송 750-8561

문서번호 공원45500-805

시행일자 1995. 9. 18.

경유

수신 중구청장

참조 공원녹지과장

취급		시	장
보존		수준 9116	
도시계획국장			
공 원 과 장	전결	공원관리계장 194	
공원행정계장	서		
기안	오 명 식 서		

제목 손기정공원 소유권 이전 및 관리비 요청 회신

1. 공녹 45500-794(95.9.6)호와 관련임.

2.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관리는 소유에 따라 관리책임이 구분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이용개체가 불특정 다수 시민이나 또는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냐에 따라 비용부담에서 부터 관리책임이 구분지어져야 할 것입니다.

3. 따라서 손기정공원은 양정중·고교 이적지로 공원의 규모가 29천㎡로서 근린공원중에서도 가장 작은 근린생활권에 속하는 공원으로 귀구에서 토지매수 및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나,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2개년(89-90)에 걸쳐 토지매수 및 공원조성을 하고 귀구에서는 마을회관, 도서관, 노인정은 물론 다목적운동장, 테니스장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근린공원으로,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귀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.

4. 다만, 소유권이전은 관리권문제가 선행된 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. 끝.



## 서울특별시

0171

4